

결 정

2018 - 2003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

주 문

東亞日報 2017년 12월 8일자 A2면 「매달 월세 나오는 ‘수익형 부동산’/매월 45만원 지급중(10년 임대)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새만금 인근의 토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.

광고는 3천만원을 투자하면 광업권을 취득했다는 땅 330㎡(100평)을 즉시 토지 이전 등기를 해주고, 월세로 매달 45만원(연 540만원)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. 그러면서 『10년간 임대료 매월 45만원』이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이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. 3천만원에 연 540만원 즉 연 18%의 비율로 10년간 임대료를 준다는 주장이다.

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로는 상당히 높은 연 18%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. 현행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.

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,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

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,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4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4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강 희	강희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4)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